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4 선고 2022가단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어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김상현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동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D동에서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2. 3.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입하는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2022. 10.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물품공급의무 이행거절을 이유로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고 E은 F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며 F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로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와 사이에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피고 공동대표이사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 경위 등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수산물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0. 1. 말경 E에 활수산물을 판매한 후 당시 미지급금 87,079,240원을 지급해줄 것을 E에 독촉하였다.

2) E은 2020. 2. 2. 기준 자신의 거래처인 F에 167,123,000원의 수산물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은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F을 운영하는 H(이후 사망하였다)이 E 운영자 I에게 F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E이 대신 변제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피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변제, F의 E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변제 및 원고의 F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변제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 대표자 J은 2020. 2. 3.경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G은 그 무렵 위 돈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J에게 주었다.

4) 원고는 피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급 물품의 종류, 수량, 공급 시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데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2년간 피고에게 수산물 공급을 요청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는 수산물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상거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이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희경

1) 원고의 2022. 10. 17.자 준비서면 참조.